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6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유만희,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병윤,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호정, 허훈, 홍국표 의원(46명)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며,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가족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자녀가족 청소년의 시립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족 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 근거를 규정함.(안 제 8조제2항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을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사용료 감면 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재료비, 국내외 숙박비 등)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며, 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 제4호 중 “각종 교육재료비”를 “부대경비(재료비, 국내외 숙박비 등)”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p> <p>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u>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u></p> <p>9. · 10. (생 략)</p> <p>③ <u>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u> 운영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p> <p>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p>	<p>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 ----- 면제</p> <p>9. · 10. (현행과 같음)</p> <p>③ <u>사용료 감면 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재료비, 국내외 숙박비 등)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며, 제1항-----</u> -----.</p> <p>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p> <p>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p>

비 고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비 고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부대경비(재료비, 국내외 숙박비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